

친환경 중소형선박 기술역량 강화사업

‘25-2차 컨소시엄 모집 공고

기술경쟁력과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·소조선업 조선사, 설계사, 및 기자재사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중소형선박 기술역량 강화사업에서 ‘25-2차 컨소시엄 공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2. 24
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

I 사업개요

1. 사업목적

- 대형 조선소와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중·소형 조선소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중·소형 조선산업 지속성장 및 기반 강화
 - * 기술인력(퇴직·청년인력)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중·소 조선소 대상 기술지원
- 친환경 중·소형 선박 기술(기자재, 설계, 엔지니어링, 영업 등)역량 강화
- 친환경기술 전문인력 고용(양성)을 통하여 중·소형 조선산업의 고급 설계·엔지니어링 인적자원 기반 마련

2. 사업내용

- 대-중·소기업 상생협력 및 조선업 전문인력을 활용(일자리 창출)하여 친환경 중소형 선박 설계·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및 역량 강화
- (전문인력활용) 조선산업 친환경 기술 보유 퇴직인력과 청년 고용을 통해 친환경 중·소형 선박 기술 전문인력 활용 및 인적자원 기반 마련
- (기술개발) 저·무탄소 중소형 선박 및 친환경 공공선박 新모델 표준선형 개발
 - 저탄소(연료절감, LNG 등) 및 무탄소(암모니아, 수소 등) 선박 기본설계 기술 개발
 - 가스·하이브리드·전기추진 등 공공선박 표준선형 개념설계 기술 개발
 - 국산 친환경 기자재 발굴 및 최적배치·설치 설계·엔지니어링 기술 개발
- (기술지원) 친환경 중소형 선박 설계·엔지니어링 기술지원
 - 대형조선소와의 상생협력으로 핵심 친환경 기술을 중소형조선소에 지원
 - 고경력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영업·설계·생산 분야 현안 애로기술 기술컨설팅
 - 해외시장 맞춤형 설계패키지(설계엔지니어링+기자재) 수주영업 지원

3. 공모내용

□ (공모과제) 수요기업의 중소형 선박 프로젝트 기본설계 기술개발 및 지원

○ (가형) 중소형 선박 프로젝트 수주·발굴 기술지원 1건 내외

- * 조선소 + 설계기업 등 多社간 협력체제 구성 가능
- * 컨소시엄 기업 수, 지원규모,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
- *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시급성, 구체성 등을 심의 평가하여 목표 이내로 선정

대상선종	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친환경 중소형선박* 및 고부가가치 신선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LNG Fuel 추진선박, LNG/LPG 운반선, LNG벙커링선박, 중소형 여객선 등 □ 중·소형선박 성능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벌크선, 탱커, 중소형 컨테이너선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컨소시엄 기업과 사업단이 공동으로 프로젝트 대상 선박의 기본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 □ 컨소시엄 기업의 선박 수주 활동을 위한 도면, 보고서 등을 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개발결과물 기업 소유

친환경 중소형선박* : 중·소형조선소에서 건조 가능한 에너지절감형 또는 친환경연료추진 일반강선

□ (수행내용)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이 중소형 선박 기본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컨소시엄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술결과물을 제공

* “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”을 통한 설계·엔지니어링의 현물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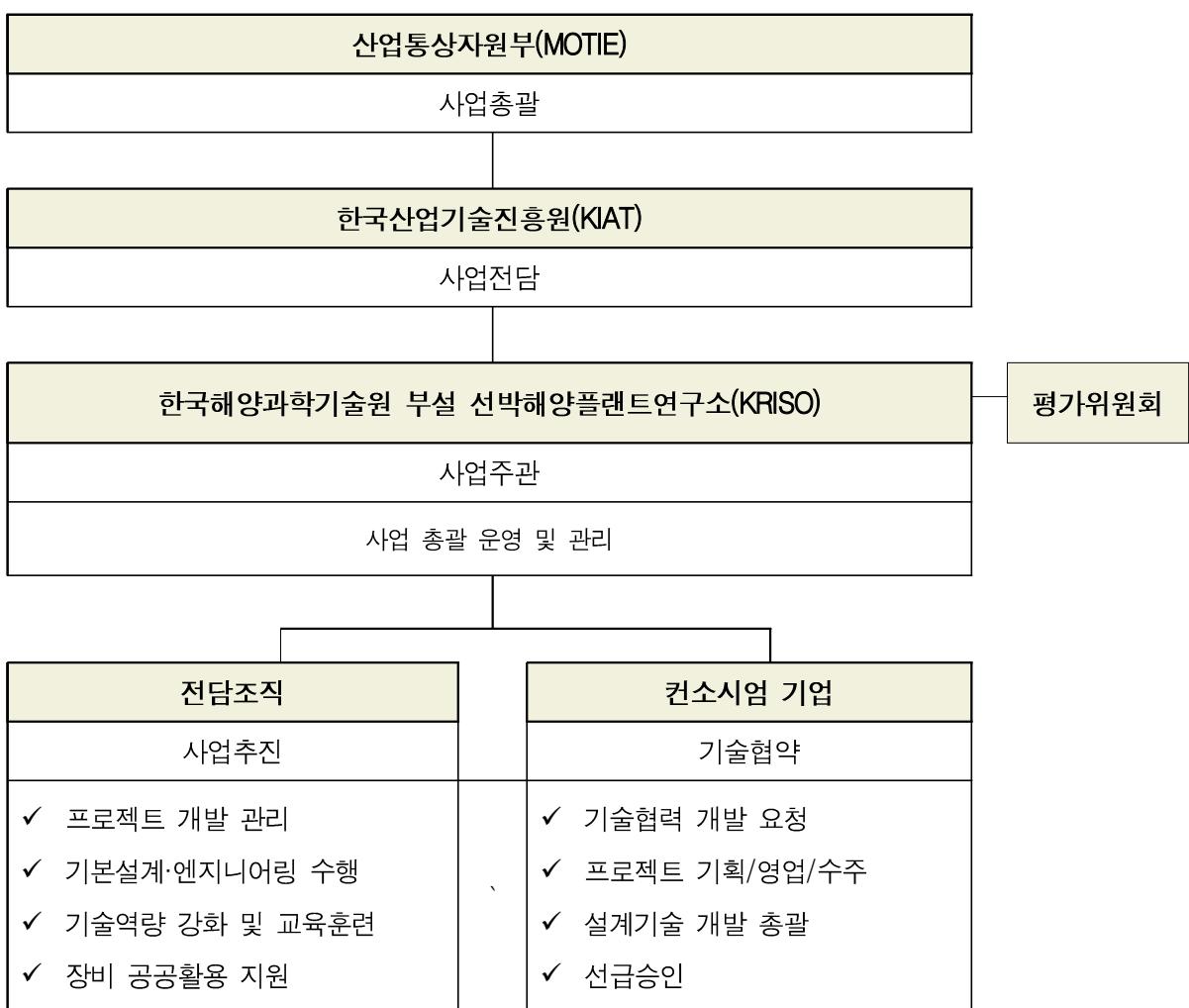
* 기업은 개발결과물을 기반으로 선박 수주활동 활용 및 현안문제 해결

유형	주요 내용	기간
가형	중소형 선박 프로젝트 수주·발굴 기술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요기업의 수주·발굴을 목적으로 기본설계 공동개발 및 지원 (모형시험 有) 	8개월 이내

※ 선정 프로젝트의 목표, 내용, 기술지원 기간 등은 기업과 협의·조정 가능

4. 추진체계

- (산업통상자원부)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
 - (전담 관리기관) 사업전담 관리, 공통 업무(과제 성과 발굴·관리 등)
 - (주관 연구기관) 사업 공고·선정,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, 공통 업무(홍보, 성과 발굴·관리 등)
 - (평가위원회) 컨소시엄 기업 선정 및 결과평가, 사업계획 타당성·적정성 검토



※ 컨소시엄 구성은 조선소 + 설계기업+기자재기업 등 多社간 협력체제 구성 가능

II 공모절차

□ 공모절차 및 일정

- 계획수립 → 사업공고 → 심의·평가·선정 → 기술협약 → 프로젝트 수행 → 결과보고서 제출 → 완료 순으로 진행

절 차	내 용	비 고	일 정
① 선정계획	컨소시엄 선정 계획 수립	KRISO	-
② 선정공고	<선정 공고>	KRISO	'25. 2월 24일
③ 신청접수	<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> •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	신청기업→KRISO	'25. 2월 24일 ~ '25. 3월 9일
④ 컨소시엄 선정	<질의 평가> • 서류적합성 및 대면 질의 평가	평가위원회	'25. 3월 12일
⑤ 상세계획	<협약준비>	사업단/선정기업	'25. 3월 중
⑥ 기술협약	<기술협약>	사업단/선정기업	'25. 3월 중
⑦ 과제수행	<프로젝트 수행> • 중소형 선박 프로젝트 기본설계 기술개발	사업단/선정기업	'25년 중 (컨소시엄 협의)
⑧ 중간점검	<진도 및 성과 점검>	KRISO→사업단	수시
⑨ 결과보고서 제출	• 협약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	사업단→KRISO	

※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

III 신청요건 및 방법

1. 신청자격

-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기술지원(협력)이 필요한 국내 조선업 중소·중견기업 및 기관
- 사업단의 기술 지원을 받아 중소형 선박 및 기자재 설계가 가능한 기업
 - 중소형선박에 관련된 프로젝트의 영업 및 수주 활동이 가능하거나, 진행 중인 기업
 - 공공선박 프로젝트 발주가 가능한 기관
 - 중소형선박에 관련된 프로젝트의 영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
 - 기타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사업 수행에 필요가 인정되는 기업
 -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사업 취지에 따라 조선관련 중소·중견기업에 우선하여 지원

< 참여기업 자격 및 범위 >

- (중소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

*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

- (중견기업) 신청기업으로 참여 가능

구 분	내 용	비 고
업종	조선기자재 관련 제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중소기업확인서(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) * 발급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, https://sminfo.mss.go.kr- 중견기업확인서(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) * 발급 : 중견기업인정보마당, http://hpe.or.kr
업력	창업 1년 초과	과제 별 접수마감일 기준
매출액	-	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

2. 신청요령

- (신청기간) 제출기간 내 미제출 된 과제는 평가대상 제외

- 제출기간 : 2025. 2.24(월)~3.9(일) 18시限

- (유의사항) 제출 기한 경과 후 제출 건은 불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

- 온라인 접수는 지정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
-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서류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- (서식교부)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 공문 발송 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홈페이지(www.kriso.re.kr)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
- (신청방법) ①온라인(이메일 접수) → ②신청서류 제출(이메일 및 방문)

○ 신청서류 목록

- * 온라인 제출처 :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 오선영 선임(syoh0@kriso.re.kr)
- * 오프라인 제출처 (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63번지 부산우체국12층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)

서식	제출방법	제출서류
1호	온라인	사업계획서 1부 [서식 제1-1호]
2호	온라인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[서식 제1-2호]
3호	온라인	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[서식 제1-3호]
4호	온라인	프로젝트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/조회 동의서 1부 [서식 제1-4호]
5호	온라인	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(사본) 각 1부 *원본대조필
6호	온라인	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
7호	온라인 오프라인	신청기업의 최근 1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* 가장 최근년도 제출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, 직전년도 제출 가능 (사유서 제출 필수) * 원본 또는 사본(원본 대조필),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

※ “가형” 과제는 ⑥, ⑦번 서류 必 제출

3. 문의처

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	내용
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	제품개발팀 오선영	TEL : 051-260-7805 E-mail: syoh0@kriso.re.kr	사업 및 공고관련 문의

IV 평가방법 및 기준

1. 평가방법

- 산학연 내·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
- 제출서류의 자격 및 적합성 평가, 신청기업 사업계획서의 질의평가
 -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도자료 발표(PPT)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
 -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,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조정
-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평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총점 결정
 - 총점 7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, 총점 70점 미만은 기술지원 제외

평가 기준	① 서류평가 신청자격 및 프로젝트 적합성 등 검토 (적합성 평가)	② 질의평가 사업계획서의 항목별 평가 (배점 100점)	총점
			100점

2. 평가기준

□ 자격 및 적합성 평가 (서류평가)

-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(제출서류 변경 불가)
- 공고내용과의 부합성, 기개발/기지원 여부,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참여제한 여부,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

<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>

구 분	확인 근거 (증빙서류)
설립연월일 (창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■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<p>*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</p> <p>**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</p>
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<p>*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당해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직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</p>

※ 협약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 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□ 질의 평가 (대면평가)

- 평가개요 : 사업계획서의 목표, 필요성, 구체성 및 활용에 대한 질의 및 평가
- 평가위원 : 산·학·연 등 내외부전문가 7명 내외

<평가기준>

- 선정평가 항목을 정성 평가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총점 결정
-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의 수행능력 비중을 강화
 - * 총점 7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, 총점 70점 미만은 지원 제외
- 관련 서식 [제1-5호 ~ 제1-8호] 활용

< 선정평가 항목 >

항목	지표	평가내용	배점
목표 및 필요성 (30)	부합성	○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의 필요성	20
	구체성	○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(기술개발 목표, 내용 등)	10
기술 특성 (20)	혁신성	○ 개발 핵심기술의 기술 수준 또는 성능의 혁신성	10
	차별성	○ 개발 핵심기술의 차별화 전략	10
개발 전략 (30)	개발방법	○ 제시한 기술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	20
	전문성	○ 수행기관의 개발 역량의 타당성 등	10
결과 활용 (20)	시장부합성	○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	10
	기대효과	○ 과제수행 결과물의 향후 매출 효과	10
계			100

*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,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3. 평가일정

- 평가일시 : 2025. 3. 12(수), 시간미정
- 평가장소 : 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 평가회의실(부산 중앙동 부산우체국 12층)
 - *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접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
4. 근거규정

- 「2025년 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」
- 「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침」
- 「친환경선박설계기술사업단 세부운영기준」

V

기술료 징수

- '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사업'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(기술료의 징수, 사용 및 관리), 제40조(사업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)에 의거 기술료 징수는 면제

VI

유의사항

- 지원제외 대상

-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.
-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,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.
- 참여제한 : 총괄책임자는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.
-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: 총괄책임자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1. 기업의 부도

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 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4.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
5. **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**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) 이때, **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**

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 및 우선주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
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

※ 위기업종 지원특례사항 확인

6.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
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